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(정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52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22.

발 의 자 : 정태호 · 이연희 · 김주영

김태년 · 이학영 · 이광재

윤후덕 · 이주희 · 안도걸

정준호 · 이수진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무주택 근로자가 지급한 월세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러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하고 있으며, 이를 이후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.

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아 산출세액이 적으면서 소득 대비 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세액 세액공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액 중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

함으로써 저소득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의 실효성을
높이려는 것임(안 제61조제4항 신설).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④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월세액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공제받지 못한 금액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) ① ~ ③ (생략)	제61조(세액감면액 및 세액공제액의 산출세액 초과 시의 적용 방법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액 중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.